

## 2010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(R&BD) 신규지원 사업공고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중 '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(R&BD)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원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9년 11월 9일  
지식경제부장관

### 1. 사업목적

-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상품·신사업 창출을 위해 국내·외에서 개발된 우수·유망 기술에 대한 사업화기획, 추가기술개발, 상품화개발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

### 2. 지원유형

#### 가. 신규창업형 개발사업

- 기술사업화전문기관(BA, Biz Accelerator)의 주도로 사업화 대상의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기획(1단계)을 통해 신규법인(TBC, Techno Biz Company)을 설립하고, 추가기술개발,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(2단계)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

※ 신성장동력분야 : '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('09.5.26)' 內 3대 분야 13개 신성장동력

## 나. 혁신기업형 개발사업

- 사업화대상의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핵심기술(이전기술 포함)과 사업화역량을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추가 기술개발,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(2단계) 과정을 지원

※ 신성장동력분야 : '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('09.5.26)' 內 3대 분야 13개 신성장동력

## 다. 기관연계형 개발사업

- 국내 출연(연)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이전받은 중소기업 보유기술 중 우수·유망기술의 추가기술 개발,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(2단계) 과정을 국내 출연(연)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해 지원

## 3. 총 지원규모 : '10년 정부예산 확정시 추후 공지

## 4. 지원내용

### 가. 정부출연금 지원기준(무보증·무이자·무담보)

| 지원유형          | 지원단계           | 지원기간      | 지원금액            |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신규창업형<br>개발사업 | 사업화기획<br>(1단계) | 4개월<br>이내 | 2천만원 이내         | 총사업비<br>전액(100%) |
|               | 사업화개발<br>(2단계) | 2년 이내     | 15억원 이내         | 총사업비의<br>60%이내   |
| 혁신기업형<br>개발사업 | 사업화개발<br>(2단계) | 2년 이내     | 15억원 이내         | 총사업비의<br>60%이내   |
| 기관연계형<br>개발사업 | 사업화개발<br>(2단계) | 1년 이내     | 과제당 1.5억원<br>이내 | 총사업비<br>전액(100%) |

## 나. 지원조건

### □ 민간부담금(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)

- 사업화개발(2단계)의 경우, 총사업비의 40%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민간이 부담하여야 하고, 당해 협약기간 내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50%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
※ '기관연계형 개발사업'의 경우 예외로 함

### □ 기술료 징수

- 사업화개발(2단계)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

※ 기술료는 「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요령」에 의해 징수

## 5. 신청자격

### 가. 신규창업형 개발사업

- 우수기술의 발굴, 사업화기획, 자본출자, 경영자문 등 신규법인(TBC)의 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술사업화전문기관(BA)

※ 기술사업화전문기관(BA)은 기술이전조직(TLO), 테크노파크(TP),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, 기술지주회사, 창업보육센터(BI),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, 기술사업화 컨설팅 회사,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

- ※ 기술사업화전문기관(BA)은 신규법인(TBC)에 현금을 출자 (신규법인의 설립일 기준으로 신규법인 지분의 10%이상 확보)하여야 하며, 당해 지분은 사업화개발(2단계)의 종료 시점까지 보유하여야 함
- ※ 비영리기관(대학, 연구소), 외국기업(기관)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

#### 나. 혁신기업형 개발사업

- 사업화대상 핵심기술(이전기술 포함)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 (2단계)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
-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- ※ 비영리기관(대학, 연구소), 외국기업(기관)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

#### 다. 기관연계형 개발사업

-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개발(2단계)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(연)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※ 신청기관 선정평가를 통한 주관기관 확정 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주관기관에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

## 6. 가산점 및 지원제외

### 가. 가산점 부여

○ 기술사업성평가(400점 만점 기준) 시 최대 10(2.5%)점 이내의 가산점 부여

① 사업화대상기술이 신기술(NET), 전력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

② 사업화대상기술이 대학, 공공연구기관(정부출연연구소, 국립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)의 이전 기술인 경우

③ 사업화대상기술이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성공 과제로 개발된 기술인 경우

○ 기술사업성평가(400점 만점 기준) 시 최대 20점(5%) 이내의 가산점 부여

①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기술사업성평가 시점까지 민간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경우(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차등 부여)

※ 민간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, 신기술금융사, 은행 및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정

※ '기관연계형 개발사업'의 경우 예외로 함

※ 투자유치 증빙자료는 '기술사업성평가'시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

## 나. 지원제외

- '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' 및 '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(기술사업화사업)'에 따른 검토기준을 준용

※ '기관연계형 개발사업'의 경우 예외로 함

## 7.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### 가. 신청서 교부

- 신청서 교부기간 : 2009년 11월 9일(월) ~ 2009년 12월 18일(금)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[www.kiat.or.kr](http://www.kiat.or.kr)) 또는 사업관리시스템(<http://tbiz.kiat.or.kr>)에서 다운로드

### 나. 온라인 등록 및 신청접수

- 온라인 등록 및 신청서 접수기간 : 2009년 11월 30일(월) ~ 2009년 12월 18일(금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 등록 후 우편접수(방문접수 가능)
  - ※ 사업관리시스템(<http://tbiz.kiat.or.kr>)에 가입하여 사업 신청 내용을 입력 후 접수증을 출력
  - ※ 접수증과 신청서(신청양식), 첨부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우편접수(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)
  - ※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- 신청서 접수처 : (135-513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 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연계팀 R&BD 사업 담당자 앞

## 8. 기타

- 사업설명회 개최일정

| 지역       | 개최일시               |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도권 (서울) | '09. 11. 23(월) 14시 | 한국기술센터<br>16층 국제회의실          |
| 경상권 (부산) | '09. 11. 24(화) 14시 | 부산상공회의소<br>2층 국제회의장          |
| 충청권 (대전) | '09. 11. 25(수) 14시 | 충남대학교<br>산학연교육연구관<br>3층 대회의실 |
| 전라권 (광주) | '09. 11. 26(목) 14시 | 광주테크노파크<br>본관 2층             |

- 상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([www.mke.go.kr](http://www.mke.go.kr)),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[www.kiat.or.kr](http://www.kiat.or.kr))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람

※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연계팀(☎ 02-6009-4342, 4345, 4346, 4348)